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박춘선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568호
-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 안 이 유

-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

3. 주 요 내 용

-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정원사 통합 관리, 경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 제2조는 ‘시민정원사’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7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는 시장이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자(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를 배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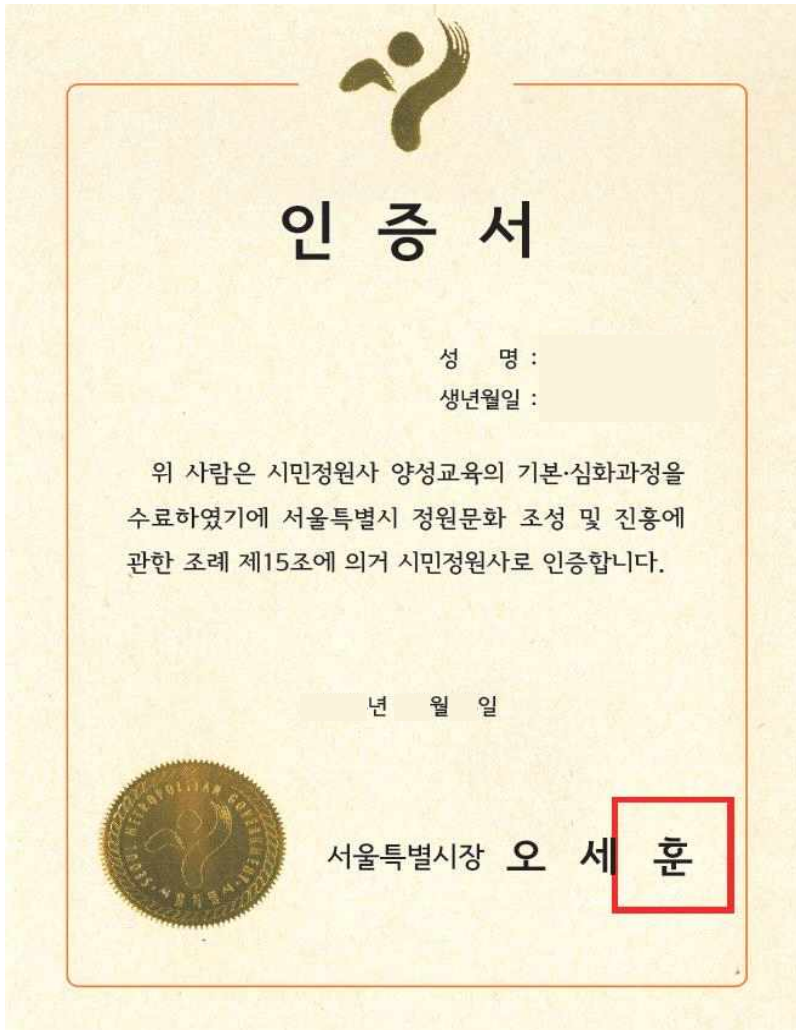
- 시민정원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 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준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여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반면, 정원문화 활동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정원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고 있는 점과 지금까지 배출된 시민정원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시민정원사 통합 관리체계 구축, 경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현 시민정원사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 하고 활성화하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2항제4호는 ‘정원진흥실시계획’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민 정원사 인증 및 지원을 명시한 것이며, 나머지 조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양식(2024)>



-
- 1)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